

## 농업생산력의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조직의 발전과정

조성백·최민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Transformation of Cooperative Group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with the Change of Agricultural Productive Force

Soung Back Joe and Min Ho Choi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 the transformation of Cooperative Groups for Agricultural Production(CGAP) with the change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e Force.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bour-power, 2)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and arable land, 3) To interpret the transformation and content of CGAP.

The population of farmhouseholds ha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60s. Especially, with the move-outs of youth ages of twenties to forties, the condition of agricultural labour-power has been more serious. The processing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was a small scale step in the 1970s, but after the 1980s there was a spread of middle-large machines. However the usage rate of agricultural machines was constrained by the bad conditions of arable land.

From the 1970s to now, the CGAP have been processed by many kinds of patterns. In the 1970s, the lack of labour-power caused the creation of the Co-Working Team. After the late of 1970s, the wage of agricultural employees was raised, because the working population of agriculture was cut down. Also, the induction of agricultural machine was promoted. As a result, in the 1980s, the Machine-Using Team occurred due to these conditions of agricultural productive force.

In the late of 1980s, the population decreased more rapidly, and the use of large machines were spread. Then farmhouseholds lacking labour-power gave a trust to other farmhouseholds and Teams which had machines. In 1990, Given-Trust Cooperations were enacted by law,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labour-power, and solve the problem of the successors of agriculture, Cooperative Organizations were also enacted by law.

Finally, in Korea from the 1970s to now, as the agricultural productive force has been changed, the Co-Working Team was transformed into the Machine-Using Team, and the Machine-Using Team was transformed into the Given-Trust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ve Organization.

#### I. 서 론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어려운 농업 현실의 극복과 올바른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농업생산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생산조직에 관한 연구 중에서 1970년대는 주로 노동조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농기계 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조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운영실태조사

연구는 각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정책적 과제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운영실태 분석에 집중된 연구였기 때문에 조직의 발생배경, 성격,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발생배경, 성격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농업 생산조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각 조직의 발생배경이나 성격의 변화는 과거의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농업생산력이 존재해 왔으며 또한 현재의 생산력은 다음 세대의 바탕이 되면서 농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나가기 때문에 농업노동력이나 농기계, 농지 등 농업생산력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노동력구성의 변화, 농업기계화의 진전, 농지기반의 정비 등으로 나타나는 농업생산력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이전의 생산조직들이 붕괴되거나 변질되며, 나아가 새로운 생산력구조에 적응하는 다른 성격을 가진 생산조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 II. 농업생산력의 변화

### 1. 농업노동력 구성 및 성격의 변화

농업노동력의 구성변화를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1960년 총인구 2,498만 9천명중에서 농가인구는 1,455만 9천명으로 총인구의 58.3%를 차지했으며 1967년에는 1,607만 8천여명 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1989년에는 6,785만 여명으로 196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다. 농가인구의 이같은 감소에 비해 농가호수의 감소추세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농가호수는 1960년에 233만호 였다가 1967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58만호에 이르렀다. 그 이후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계속 감소하여 '80년대 초에는 200만호 이하로 계속 줄

어들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176만호에 머물고 있다.

농가인구의 감소에 비해 농가호수의 감소가 완만한 것은 젊은 노동력 인구의 급속한 유출이 중심이 되는 이농현상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시말해, 이는 농가 가족원 중 일부, 특히 젊은 노동력 인구가 유출되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농촌에 잔존하는 농가인구는 자연히 노령화 될 수 밖에 없었다. 호당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호당 농가인구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5명대, '80년대에는 4명대로, '90년대에는 3명대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출생률의 저하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일부가족의 유출로 인한 농촌가족의 분해가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성별, 연령별 농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생산적인 노동력인 20~49세의 연령층은 점차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90년대에 들어서는 '70년대 초반에 거의 30% 밖에 되지 않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50~59세의 연령층의 남자는 '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198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여자는 꾸준히 증가를 보이다가 남자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남, 여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농가인구가 '60년대에 비하여 30%정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오히려 1973년의 60세 이상의 인구 수가 1,154천명인데 비해 1993년은 1,265천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가속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겠다. 농업취업자수는 1965에 8,206천명에서 다소 줄곡은 있지만 1977년 5,161천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 취업자수에 대한 농업취업자수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1960년대에는 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1970년대 말에는 4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1965년의 56.0%의 비율에서 1994년에는 13.4%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농업 노동력의 타 산업으로의 급격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림어업취업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967년 남성 취업자의 비중이 60.7%에서 1994년에는 53.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75년 41.5%에서 1994년에는 46.2%로 늘어, 농업 노동력의 여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층은 그 비중이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60% 이상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36.7%로 하락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50~59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수의 비중은 1967년의 5.8%에서 1994년의 33.3%로 매우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60년대 말에서 '90년대초까지 살펴보았다. 노동력의 과잉과 잠재적, 현재적 실업이 '60년대말 이후 노동력의 감소와 더불어 점차 완화되어 오다가,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번기에는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80년대 들어서는 절대적인 부족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농업 기계화 및 재배기술개선 등으로 노동력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윤수종, 1990:50).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업 노동력의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라 농업 기계를 움직일 사람조차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농업노동력 구조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율이 11.6% 정도의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화, 여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2. 농업생산수단의 변화

### 1) 농업기계화의 진전

일반적으로 영세농 경제하에서는 농가의 가족 노동력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기계화와 본질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기계의 구입에는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대개 농민은 항상 자금 부족 상태에 있으며 기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경영규모의 영세성에 의해 과잉투자가 되기 쉽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영세농하에서는 기계화가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한국농업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제조건의 변화, 특히 한국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농가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는 영세농 경제하에서도 농업의 기계화가 일정한 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김형용 외, 1993:8) 특히, 산업화가 점차로 가속화 되면서 농가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농촌노동력의 부족 등의 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같은 농촌노동력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농업 기계화는 농민들을 중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의 주요 농정과제는 주곡의 자급달성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다수확 신품종을 개발·보급하였다. 신품종 도입은 그 동안의 벼농사 재배기술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주요한 변화는 조기재배, 보온못자리의 설치, 물관리의 치밀화, 다비, 적기시비, 병충해방제의 철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기술의 변화는 농가로부터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정부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재배 권장은 정부와 농가간에 때로 마찰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안준섭, 1994:58).

1970년대의 호당 농가인구를 보면 5.5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농림어업종사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세이하가 50% 수준을 넘고

있었다. 또한 농기계 값도 노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농민에 의한 농기계의 보급과 이용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동력경운기 보유대수는 1965년 1,111대에서 1981년 350,462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용양수기, 병충해방제용기구, 동력분무기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70년대의 농업기계화의 특징은 전체 작업이 기계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육묘작업을 제외하고 본답작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본답작업 중에서 병충해방제나 제초작업은 방제기나 제초제 등 화학제의 보급으로 크게 단순화되었고 경운·정지작업은 축력으로부터 동력경운기로 점차 대체되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농업기계화는 동력경운기 단계라고 칭해지는 소형기계화단계에 있었으며, 농기계

도입의 목표는 적극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보다는 축력 또는 인력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작업의 스피드화를 달성, 적기경영을 실현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안준섭, 1994:60).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농업기계화는 점차 가속화 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의 농기계들은 주로 경운기, 탈곡기, 방제기, 양수기 등이 중심이 된 농업기계화의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중·대형 농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농업기계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 대형탈곡기 등 중형, 대형 농기계들이 도입되어 점차 일관작업화가 가능한 기계화가 이루어져 간다. '80년대 이후의 주요 농기계의 보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80년대 이후 주요 농기계 보급률

(단위 : %)

구 분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동력경운기	24.5	32.6	38.0	41.7	45.2	50.1
농용트랙터	0.4	0.6	1.1	1.8	3.1	4.8
동력이앙기	1.2	2.2	4.1	6.3	9.8	13.2
바인더	1.0	1.3	2.1	2.8	3.3	4.0
콤바인	0.3	0.6	1.1	1.9	2.5	3.8
동력탈곡기	13.5	15.7	16.2	16.1	15.6	13.9
동력양수기	13.1	14.9	15.8	18.4	20.1	22.1
곡물건조기	0.1	0.3	0.5	0.8	1.3	2.0

자료 : 통계청 / 통계정보(천리안) 각년도 재구성.

주 : 보급률은 100호당 보급대수임.

이 시기에 동력경운기의 보급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운기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트랙터의 급속한 보급확대로 인한 대체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농기계에서 성능이 우수한 대형 농기계로의 대체 기계화

는 탈곡작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던 동력 탈곡기의 보급률이 1985년 30여만대에서 198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를 해 1993년도의 동력탈곡기의 보급률이 13.9%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운기와 마찬가지로 탈곡기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의미

하기도 하겠지만 수확작업에서 탈곡작업까지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콤바인의 보급이 급속히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90년대 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5년도에 이루어진 농촌진흥청의 한 시험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8개도 58개 군 콤바인, 바인더 소유농가 800농가를 조사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바인더와 콤바인 평균 농작업 이용시간은 바인더가 25.7시간, 콤바인 139.0시간으로 '81년도 조사치에 비하여 바인더는 34%가 감소한 반면 콤바인은 35%가 증가하였다. 또한 연평균 작업면적을 살펴보면 바인더는 2.13 ha, 콤바인은 14.87ha로 '81년 조사치에 비하여 바인더는 36.4%가 감소하였으나 콤바인은 55.5%의 현저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임작업율에서도 콤바인은 78.1%로 콤바인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1985:53).

## 2) 농지기반의 정비

농업생산력을 규정하는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생산수단인 토지를 들 수 있다. 물론 토지라고 할 때에도 인간의 노동력이 가해져서 생산이 가능한 농지 즉 경지를 의미한다. 농지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경지의 면적, 이용률, 수리상태, 비옥도 등은 농업생산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다 총답면적 및 경지정리 면적을 살펴보면, 총답면적은 1970년 이전 1,194천ha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8년 1,357천ha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년 1,298ha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지정리율을 보면 1970년 이전에는 12.1%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경지정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1982년 30%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3년 현재 49.5%의 경지정리율로서 경지정리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상태이다.

배수개선면적을 보면 1975년 9.8천ha에서 1980년 20.3천ha, 1985년 33.2천ha, 1993년 현재

61.1천ha로 증가하고 있다. 수리답 면적을 보면 농조답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1992년 518.2천ha였으나 1993년 510.4천ha로 다소 감소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리답율은 1975년도에 62% 수준에서 1993년 현재 74%로 크게 향상되고 있다.

## III. 농업생산조직의 발전과정

앞 장에서 농업 노동력, 농업기계, 농지 기반의 정비 등의 변화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농업생산력의 변화가 농업생산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농업생산조직의 발생과 쇠퇴, 그리고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조직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동작업반

#### 1) 공동작업반의 발생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이 널리 행해져 왔다. 특히 논농사에 있어서 공동노동이 조직화되어 발전해 왔으며 생산조건의 변화에 따라 공동노동의 형태 및 내용도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60년대 말부터 농가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시작되었고 '70년대 들어서는 농업노동인구의 유출이 더욱 가속화 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더욱 농업노동력의 조직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두레나 고지대 같은 마을내 노동조직이 사라지기는 했으나 품앗이는 널리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정도 노동력 부족현상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모내기 탈곡, 벼베기 같은 농업노동의 집약적 투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 결합형태에 머물고 있던 품앗이만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감당해 내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 조직하여 공동노동을 하는

공동작업반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윤수종, 1990:342-343) 이렇게 형성된 공동작업반은 답변적이 넓은 마을에서는 2개 이상의 작업반이 존재하기도 했고, 작업반이 없는 마을로 작업원정을 나가기도 했다. 공동작업반은 기본적으로는 작업의뢰자의 작업을 해주고 일정한 작업료를 받으며 각 작업반원에게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배분해 주는 조직이었다. 또한 공동작업반의 조직 방식을 살펴보면 작업종류, 구성원의 성격 그리고 마을의 크기나 노동력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작업별로는 이앙작업의 경우 마을단위로 거의 전 노동력을 결집하여 농번기의 농사일을 공동으로 해나갔는데 반해, 벼베기작업의 경우는 이앙작업보다 그 규모가 작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성격을 보면, 농가중심 조직은 품앗이적인 성격이 강했던 반면, 비농가중심 조직은 도급제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공동작업반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었으며 특히 급속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70년대 말에 집중되고 있다 (안준섭, 1994:61).

## 2) 공동작업반의 변화과정

공동작업반의 발생은 농업노동력의 유출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되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력의 효율적 조절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던 공동작업반도 농업노동력의 계속되는 유출과 기타 농업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해 갔다.

공동작업반의 해체 및 변질은 공동작업반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체요인, 즉 보상률을 둘러싼 계층간의 갈등, 작업순서를 둘러싼 참여농가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 기계화라는 농업생산력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1984년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북 김제의 한 평야 마을에서 1980년 이전에는 60명 규모의 모내기작업반이 2개가 있었는데 기계화가 본격화된 1982년 이후에는 1개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규모도 1983년에는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마을은 조사당시 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트레터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이 1981년에 조직되어 있었으며 수탁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상주지역의 한 마을에서도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5개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던 것이 1983년에는 3개, 1984년에는 2개로 줄어 들었다. 이 마을에도 이앙기 5대, 콤바인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마을의 60%를 기계이앙하고 있었다 (이정환, 1984:37-38).

이러한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계 이앙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수확이나 탈곡작업도 바인더나 고성능 동력 탈곡기, 콤바인 등을 이용한 작업이 늘어나 공동작업반에 의한 작업이 줄어 들고 작업기간도 단축되었다. 특히 기계화에 따른 공동작업반의 위축은 비농가나 빈농들이 많이 참여하여 도급적 성격을 띠는 작업반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상층농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용해가면서 그들의 작업을 주로 해 나갔던 이러한 공동작업반은 급속히 줄어 들거나 해체 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작업조직들은 그냥 해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니며 기계의 도입과 함께 기계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탈곡작업반의 경우는 일찍부터 동력탈곡기를 이용하면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 변모해 갔으며, 수확이나 모내기 등에서도 공동이용조직으로 활성화되어 갔다 (윤수종, 1990:378-380).

## 2.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발전과정

1970년대의 다양한 사업주체와 다양한 농기계·시범 및 사업 규모로 실시되었던 시범사업 중심의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보급과 이용을 농민에게 홍보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당시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광범한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수노동 중심의 농업생산조직이 이앙·수확작업 등을 해결하고 있었고, 농가의 노동력부족이 이앙이나 수확작업 이외에

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농가 인구의 계속되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이 완화되었던 이유는 농업취업자 수가 '7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노동 중심의 조직에서 기계중심의 생산조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농업생산력 조건이 조성되지 않은데 따라 농민들이 기계작업 수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한 기계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며, 유지 관리비의 과다지출, 유능한 농기계조작요원의 절대 부족, 농기계 관리소홀과 이에 따른 고장 빈발 및 수리비 과다지출 등이 원인이 되어 경

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정부 주도로 조직된 공동이용조직과는 별도로 농민들의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공동기계이용조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계소유자와 기계 이용자간의 차이가 다르고 공동이용조직이 단체주도로 조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내 자생적 공동이용조직을 활성화하여 농민중심으로 기계화영농단이 198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다(오재균, 1992:36). 그 이후 현재 까지 이르고 있는데 영농단의 발전과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계화영농단의 기종별 작업면적 비교

(단위 : ha)

구 분	1982	1985	1987	1990
트 렉 터	37.2	20.8	25.6	26.6
이 앙 기	12.6	8.9	11.1	14.1
콤 바 인	19.1	14.9	18.4	22.4

자료 : 윤수종, 1990. p. 522.

농협조사월보, 1986. 7. p. 4.

강정일 외, 1991, p. 23를 이용 재구성.

〈표 2〉는 기계화영농단의 기종별 평균 작업면적의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이앙기, 콤바인의 경우는 '80년대 중반에 작업면적이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트렉터의 경우 작업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82년에 4.7가구당 1대, '85년 3.3, '87년 2.6, '90년 2.3 그리고 '94년 1.8가구당 1대로 경운기 보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트렉터의 작업면적의 감소는 경운기와 경운, 정지작업에 대한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경운기 보급률의 둔화로 인해 트렉터 이용이 다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농단의 작업량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작업면적에 비하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편인데, 이는 농기계의 고장 시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농민들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지정리율이 '80년대 초 30%, '80년대 중반 35%, '80년대말 그리고 1993년에 49.5%로 아주 낮고 필지규모 및 농로의 협소 등으로 중·대형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농업기계화기반 실정 때문이다(윤수종, 1990:523-524).

1970년대의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부주도의 농협이나 농조 등의 단체 중심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농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조성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의 한 조사<sup>11)</sup>에서 기계화영농단 조

직동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기계화영농단의 조직동기

(단위 : %)

구 분	비 율
노동력 부족, 노임의 고가	46.7
임작업을 통한 소득증대	7.0
영농단 조성	4.2
중노동으로부터 탈피	16.3
타작물로의 경영 확대	2.1
이웃의 권유	3.4
농기계 구입조건의 양호	20.3
계	100.0

자료 : 오재균, 1992.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노동력 부족과 노임의 상승으로가 46.7%였으며, 그 다음은 농기계 구입조건 양호, 중노동에서 탈피, 임작업을 통한 소득증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기계화영농단은 농민들의 농업기계의 도입과 공동이용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조성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70년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기계화 영농단은 그 조성초기에는 주로 조직구성원의 농작업을 해결하는데 설립의 주요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농기계를 운전·관리하는 주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흡으로 인해 주작업자의 조직 이탈, 공동이용·관리에 따른 농기계의 조기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조직들이 수년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해체 혹은 재편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에 이

르러 영농단은 그 구성원이 주작업자 중심으로 소수화되고, 구성원농가의 작업 외에 구성원외 작업도 상당부분 수탁받아 처리해 주게 됨으로써 공동이용 조직으로부터 수탁조직으로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갔다 (안준섭, 1994:74).

### 3. 위탁영농회사

#### 1) 농작업 수·위탁의 발생과 실태

농업경영은 가족경영으로서 가족노동력 구성에 따라서 그 경영규모의 크기가 구성된다<sup>2)</sup>. 즉 농업경영에 있어서 가족노동력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농업노동력의 유출, 특히 <그림 2>에서 보듯 이에 20~49세의 젊은 노동력의 감소와 같은 농업노동력의 변화는 우리 농업경영에 변화를 생기게 하고 있다.

IV장에서 살펴 본 대로 농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노령화·부녀화 등 질적 악화는 농가노동력의 만성적인 저소득, 저취업상태에서도 농번기를 중심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낳고 농촌노임의 상대적 등귀를 초래하여 농업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수단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70년대 경운기를 중심으로 소형농기계의 보급이 시작되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콤바인, 트렉터 등 대형농기계의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농외유출은 기본적으로 가족 협업체제에 의존하는 영세소농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가족협업체제의 붕괴는 가족경영의 자기 완결구조를 와해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농가의 농작업 일부나 농경지의 일부를 경영외부에 위탁 혹은 임대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김형용,

1) 이 조사는 1991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의 '85~'90년 사이에 조성된 6개군 18개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논문인데 조사 영농단의 농기계 소유형태, 이용실태, 기종별 경영실태, 운영 및 관리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오재균, 1992,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 chayanov,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1994:6-7).

이러한 수·위탁영농은 수탁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농기계의 손익분기점과 이상을 경작하게 되어 기계고정비를 충당함은 물론 어느 정도의 수익성도 올릴 수 있게 되고 또한 위탁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 작업을 비교적 싼 수수료로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다른 부문에 취업함으로써 농외소득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경작비율의 증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계산이 농작업 수·위탁의 또 다른 조건이 되기도 한다. (도규만, 1992:30). 이하에서는 1988년 농협중앙회 조사부에서 지대별로 선정된 8개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농가노동력구조의 변화에 관한 조사' 자료를 미국재배농가 381호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안준섭(농협조사월보, 1989)과 도규만(1992)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농작업 수·위탁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대상지역은 도시근교, 농사 혼합지대, 산간지대, 벼농사지대 각각 2개마을을 선정하여 총 8개마을 463명을 조사한 중에서 미작농가 381명(82.3%)만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농가 중 여자가 경영주인 농가가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30~39세 12.3%, 40~49세 22.3%, 50~59세 34.1%, 60세 이상이 30.4%로 50세 이상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은 대부분이 국졸이하(70.6%)로 나타났다.(도규만, 1992:31). 농작업위탁농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운작업의 위탁비율은 '79년 이전에는 18.1%에서 계속 증가하여 '86년 이후에는 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앙작업 역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드러진 것은 탈곡작업의 경우 10~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콤바인을 이용한 수확작업은 '86년 이후 57.2%로 전체 위탁작업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낼 정

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운·정지작업은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79.2%, 이앙작업에서는 71.7%, 벼베기작업에서는 70.5%, 타작작업에서는 69.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작업위탁이 50세이상의 노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탁농가의 연령별 분포는 20대에서는 62.2%, 30대에서는 52.1%, 40대에서는 31%가 농작업수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 일수록 수탁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농가와 수탁농가의 소유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유규모별 위탁농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0.5ha미만이 42%, 0.5에서 1.0ha가 32.7%로 전체 위탁농가의 74.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1.0ha미만의 농가에서 농작업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호당 경지면적이 논 1.3ha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미작 부분에 있어서 자기완결적 구조가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에 비해 수탁농가는 소유규모별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농작업위탁농가를 위탁작업 결합유형별로 보면, 수확작업만을 위탁하고 있는 농가가 64호로 가장 많았고, 그외 경운+이앙+수확이 47호, 경운+이앙+수확+방제가 32호, 이앙+수확이 30호 순으로 나타났다(도규만, 1992:38). 또한 경운+이앙+수확작업이 53.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앙+수확작업은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운 작업의 위탁율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방제와 건조작업 특히 건조작업은 거의 위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조기의 보급률이 낮고 대부분의 농가가 자연건조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2년도에 위탁농가의 위탁유형을 조사<sup>3)</sup>한 결과가 있는데 앞의

3) 이 연구는 199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의 8개도 16개 지역에서 수도작 농작업을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한 농가 80호, 인근의 개인수탁자에게 위탁한 농가 80호 등 총 160농가의 수도작 위탁영농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박평식 외, 1994, 수도작 위탁농가의 영농실태와 경영개선방안 연구, 농업논문집 36(2).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몇 가지의 변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1992년도에 조

사한 위탁작업 유형이다.

<표 4>

위탁농가의 위탁작업유형 구분

(단위 : 호, %)

위 탁 작 업 유 형		회사에 위탁	개인에 위탁	계
대 부 분 작업위탁	완전위탁	3( 5.0)	0( 0.0)	3( 0.3)
	경운 + 육묘 + 이앙 + 방제 + 수확	16( 26.2)	1( 0.4)	17( 19.5)
	경운 + 육묘 + 이앙 + 건조 + 수확	42( 68.8)	25( 99.6)	67( 80.2)
	소 계	61( 76.2)	26( 32.5)	87( 54.4)
주 요 작업위탁	경운 + 이앙 + 수확 + 건조 or 방제	9( 53.0)	17( 43.5)	26( 46.4)
	경운 + 이앙 + 수확	8( 47.0)	22( 56.5)	30( 53.6)
	소 계	17( 21.3)	39( 48.7)	56( 35.0)
일 부 작업위탁	경운 + 이앙 or 수확	0( 0.0)	8( 53.3)	8( 47.0)
	이앙 + 수확	2(100.0)	7( 46.7)	9( 53.0)
	소 계	2( 2.5)	15( 18.8)	17( 10.6)
계		80(100.0)	80(100.0)	160(100.0)

자료 : 박병식, 1994, p. 622.

'88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92년도에 조사한 위탁작업 유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변화가 건조 작업의 위탁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88년도 조사에서 경운 + 이앙 + 수확 + 건조 작업의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 정도로 아주 낮았던 반면 '92년도 조사에서는 41.8%라는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탁하는 작업 종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운작업에서부터 이앙, 방제,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수도작 영농에 있어서 대부분의 작업에 대한 위탁 비율이 '88년도 조사에서는 28.2% 였던 것이 '92년도 조사에서는 54.4%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하는 비율은 76.2%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비교에서

볼 때 농업 노동력 조건이 '80년대 보다 '90년대 들어서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대형농기계의 보급 확산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1991년 이후 위탁영농전문 조직인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농작업 대부분을 위탁하는 농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농작업 수·위탁 실태를 사례조사된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위탁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경지규모별로는 1.0ha 미만의 농가가 위탁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앙, 수확 작업에서 위탁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농작업 위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2) 위탁영농회사의 발생과 법적근거

앞에서 살펴본 농작업위탁의 실태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농가에서 한가지 작업이상을 위탁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농업생산력 조건을 미루어 보아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농업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더욱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80년대 후반의 대형농기계 보급의 확산 등의 조건은 농작업을 개별농가간의 수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게 했으며, 그로 인해 보다 본격적으로 영농을 대행해주는 조직이 출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게 된다. 또한 정부도 1989년 4월 28일에 발표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에 전문영농 대행조직인 위탁영농회사 설립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탁영농회사는 지금까지의 농기계 관련 조직들이 대부분 순수한 협동체의 성격이었던 것과는 달리 법인성격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의 조직은 그 구성시 정부의 일정지침이 주어지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거나 참여자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는 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기업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조직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강정호 외, 1994:22).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산업인력으로서 농업인 등을 육성하고, 적정규모의 법인경영체의 설립을 지원하여 가족농체제를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에 개정된다. 개정된 내용중에서 위탁영농회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농업, 임업, 어업 경영자를 산업화시대의 전문직업인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 어민 등 의 용어를 농업인, 어업인 등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 위탁영농회사의 육성 조항에

서 현행의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고 농업회사 법인이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여기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의를 농지법 제1장 제2조 제3호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 일 것.
- ②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 법인의 총 출자액의 2분의 1 을 초과할 것.
- ③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이 농업인일 것. ④ 농업회사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 4. 영농조합법인

##### 1) 협업경영의 성립

농업경영은 하나의 경영관리 조직하에서 조직된 인적, 물적 경영자원의 집합체이며, 이러한 농업경영의 유지, 발전은 사경제적 측면이나 사회경제적 관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호당 평균인구가 '90년대 들어 4명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1994년 현재 3.32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농업 노동력의 이러한 격심한 유출은 농업경영의 계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즉, 후계 농업경영자의 신규 참여에 의한 경영자원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농업경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김정호 외, 1990:109-110). 또한 생산조직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 요소의 조직화 혹은 결합을 통하여 개별 경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가 지배적일 수 밖에 없으나, 점차적으로 생산 요

소를 통합 내지는 재결합하여 새로운 경영 단위로서의 규모 경제를 추구하게 된다(정기환 외, 1993:96). 이러한 새로운 경영단위로 협업경영체가 성립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협업경영이 논의된 것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3년 정부는 시범적으로 5개 지구에 토지 협업농장을 구상하게 된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협업 운동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협업시범 농장은 당시의 협업운동이 농가의 조직화 요구

라는 자발적 동기라기 보다는 외부적 발의에 의해 추진되었고, 경영체의 설립과 유지,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체제의 미비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된다. 그 이후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게 된다. 여기서 협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과 개별가족 경영간의 경영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개별경영과 협업경영간의 경영행태 비교

구 분	개 별 경 영	협 업 경 영 (법 인)
경영실체의 성격	단독자연인	복수출자자에 의한 독립법인
사업의 계속성	사망에 의해 종결	영구적이거나 정해진 기간
책임형태	무한책임	유한책임
자본의 원천	개인의 투자	구성원의 출자, 차입금, 보조금
토지의 조달	상속, 구입, 차입	출자, 구입, 차입
의사결정	소유자 (경영주)	구성원 및 사원의 합의
이권의 이전	개별경영의 종결	지분의 양도는 경영체의 계속성에 영향 없음
소유자의 사망	상속 또는 파산	지분은 유산 또는 상속에 의해 남게 됨

자료 : 김성호 외, 1990. p. 107.

개별경영은 경영주의 사망과 함께 사업이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개별경영은 경영주 단독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법인의 경우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위험 부담도 감소된다. 특히 이권의 이전으로 개별 경영은 종결되지만 법인경영은 다른 구성원에 의한 지분의 양도 혹은 차입, 구입 등으로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2) 협업의 형태

협업의 형태는 대체로 작업의 협업과, 경영의 협업, 그리고 생활의 협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작업의 협업 – 작업의 협업화는 단순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며 어떤 일정 작업 과정만 협동으로 하는 것이며 개인적 개별 경영은 그대로 각자가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영의 협업 – 경영의 협업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으나 일단 개별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농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경영상의 계획은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협업체에서 전체의 계획성에 의하여 하나의 경영체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의 협업체화도 협업 경영에 참가한 부문에 따라 부분 협업 경영과 전면 협업 경영으로 나누어진다. 또 소비생활까지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일체 생활 협업 경영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부분 협업과 전면 협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협업에 참여한 작목의 숫자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주종목이 협업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

① 부분협업경영 – 일반적으로 부분협업 경영이라 하면 개별경영을 중심으로 하면서 축산, 경종, 농산가공 등의 여러 종목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나 몇 개 부분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면협업경영 – 전면협업경영은 협업 경영에 참여한 경영부분이 개별경영에 남겨진 부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협업경영체의 통일적이고 집단적 관리하에 개별경영이 흡수되어 각 경영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협업경영은 재산의 소유방식과 생산물의 분배방법과 소비생활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면협업경영에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산만을 공동으로 하고 소비생활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저급형태로 보고, 소비생활까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고급 형태로 본다(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0:290-293).

### 3) 영농조합 법인의 법적근거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에 발표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이 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중 당해 시도 거주요건과 3년이상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자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1994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가. 농업인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가구당”은 “조합원 1인당”으로 본다.

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시·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sup>4)</sup>

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농민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바. 영농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 기재 사항·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단체의 조합원 또는 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감면, 농작업 대행용역시 부가 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에 대해서는 면세율 적용하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조합법인에 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당소득 중 농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 이외의 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하고 그 외 배당소득은 5% 분리 과세, 농지 9천평, 초지 4만5천평, 산림지 9만평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농업 노동력의 변화, 농업기계화의 진전, 토지 기반의 정비 등으로 나타나는 농업 생산력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이전의 생산조직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붕괴되거나 변질되며, 나아가 새로운 생산력 구조에 적응하는 다른 성격을 가진 생산조직들로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력의 변화를 먼저 농가호수, 농가인구 및 호당인구의 변화와 성별 및 연령별 농가인구, 연령별 농업취업자수의 분석을 통해 농업 노동력의 구성과 그 성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농가인구는 1960년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노동력의 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인구 구조의 특성이 노령화, 여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농업생산수단의 변화 상태를 농기계 보급상황과 작업별 기계화율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1970년대 소형 기계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주로 동력 경운기의 보급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방제기, 틸곡기 등의 보급도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중·대형 농기계의 보급에 따른 일관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농지기반정비 상황은 매우 저조하여 효율적 농기계이용의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력의 변화가 각 농업생산조직의 발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동작업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공동작업반은 주로 농업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70년대 중·후반에 발생하게 된다. 공동작업반은 농번기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노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 조직으로서 '80년대 초 농업 노동력의 계속되는 유출과 농업 기계화의 진전 등의 이유로 쇠퇴, 소멸된다. '70년대 말부터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며 '80년대 들어서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운영을 하는 기계화영농단이 출현하게 된다. 기계화 영농단은 주로 중·대형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마을단위로 공동이용과 소규모 수탁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과 영농단원의 이탈 등으로 점점 소수화 되며 수탁작업의 비율도 높아간다. 농작업 수·위탁의 발생은 농업 노동력의 유출로 영세소농의 자기완결적 체제가 와해되고,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나 조직에게 농작업 일부 혹은 농경지의 일부를 경영외부에 위탁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농작업 위탁은 주로 경영주의 연령이 50세 이상, 경지 소유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위탁 작업 유형은 일부 작업에서 경운, 이앙, 수확, 건조에 이르는 대부분의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90년대는 농업 노동력의 급격한 유출과 더불어 농업 경영 후계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1990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은 개별 농가간에 행해져 오던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수·위탁 관행을 전문영농대행 조직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 경영체의 창출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위와 같은 조직은 과거 임의 조직과는 다르게 농업이 하나의 산업이라는 인식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뒷받침된 법인체 조직이라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 V. 참 고 문 헌

1. 강경선, 1981. 농업생산조직에 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2. 강정일 외, 1993.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 연구보고 273 농촌경제연구원.
3. \_\_\_\_\_, 1994.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299, 농촌경제연구원.
4. 강정일, 강창용, 이성호, 1991. 기계화영농단의 관리 및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4(2).
5. 강창용, 이성호, 1990. 농기계공동 이용조직의 변천에 관한 소고, 농촌경제 13(2).
6. 고영수, 1992. 한국 농업생산력 구조변화에 따른 농민계급 분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정호, 김홍배, 1990.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김정호 외, 1994.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연구보고 3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_\_\_\_\_, 1993.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김지선, 1991. 이농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변화와 기계화 과정,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1. 김현숙, 1991. 농업구조의 재편과 생산조직의 발전방향,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pp. 139-204.
12. 김형용, 1993.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실태와 육성방안, 농업정책연구, pp. 31-56.
13. 김형용 외, 1993.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전남·북지역을 중심으로 -, 순천 대 지역개발연구 제4집, pp. 103-128.
14.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1985. 농업기계이용실태 조사연구, 시험연구보고서.
15. 농협조사월보, 1980. 11. 단위조합 농기계공동이용사업의 현황 분석.
16. \_\_\_\_\_, 1981. 4. 농기계공동이용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17. \_\_\_\_\_, 1985. 9. 농업기계화와 경제성 분석.
18. \_\_\_\_\_, 1986. 7.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운영현황과 과제 - 새마을 기계화영농단의 사례 -
19. \_\_\_\_\_, 1989. 6. 미작농업의 농작업수탁실태에 관한 소고.
20. 도규만, 1992. 농업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농업기계화 전개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

문.

21. 문팔용, 1980. 농업기계화의 정책과제 -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 연구조사보고 80-03.
22. 박평식 외, 1994. 수도작 위탁농가의 경영실태와 경영개선방안 연구, 농업과학논문집 36(2), pp. 619-627.
23. 상업농 경영 편집부, 1994.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와 육성대책.
24. 신용하, 1988.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 이론』 -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 두레와 농민문화, 한길사.
25. 안준섭, 1994. 한국 미작농업부문의 생산조직에 관한 연구 - 위탁영농회사를 중심으로 - .
26. \_\_\_\_\_, 1992. 영농법인에 관한 일 고찰, 농촌사회 제2집.
27. 오재균, 1992.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8. 유인호, 1967. 한국 농업협업화에 관한 연구, 한국 연구원.
29. 유종완 외, 1991. 12. 농업생산조직의 유형과 농업구조문제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pp. 19-40.
30. 유창열, 1992. 농업노동력 유출에 따른 농기계 공동이용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31. 윤수종,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2. 이남선, 1987. 마을단위 농업생산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33. 이동호 외, 1991. 농업경영의 발전과 농업생산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연구.
34.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5. 주봉규, 1981. 농업생산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학연구, pp. 69-82.
36. 천리안 범령 데이터 베이스, 199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37. 최민호, 이기송, 양승춘, 1983. 농기계공동이용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5권 1호
38. \_\_\_\_\_, 1984.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확대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6권 1호.
39. 하광훈, 1993. 한국의 이농현상과 농촌사회구조의 변모,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88.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I, 연구사.
41. \_\_\_\_\_, 1990.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길사.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업현실과 농업기계화.
43. Chayanov A. V.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by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 44 Edward Reed, 1978. Organizational Issues in Group Farming in South Korea L T. C. No. 119Dec.
45. Koo Hagen, Barringer, R. Herbert, 1977. Cityward Migration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in Two Korean Cities, Rural Sociology, Vol. 42, No. 1, CD-ROM, Abstract.
46. Yunshik Chang, 1989. Peasants go to town: The rise of commercial farming in Korea, Human Organization, vol. 48, No. 3.